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481
----------	------

제안년월일 : 2023년 11월 29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3년 10월 13일 운영희 의원이 발의한(의안번호 1314)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10월 16일 이희원 의원이 발의한(의안번호 1317)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3년 10월 16일 김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안번호 1394)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10월 2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기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 의안번호 1314번은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1317번은 이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1394번은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각각 발의된 바, 이를 조정하여 하나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이 조례 목적 조항에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조).
- 시장에게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구·조사·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신설).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제2항”으로,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 및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 교육 등을”을 “안전,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구·조사·홍보·교육 등”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마약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 치료보호, 재활 등 통합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가족, 시민 대상 마약류 문제 정보제공, 단약지지 및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상담
2.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기반 연계 프로그램 등
3. 마약류 사용의 예방과 치료 중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4. 마약류 중독자 상담·치료·재활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약류 중독 관리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제3조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서울특별시립병원이 우선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u>」 제2조의2제1항, 「<u>청소년 보호법</u>」 제5조제1항 및 <u>같은 조 제2항</u>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u>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u>연구·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u></p> <p>제5조(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 ① (생략)</p> <p><u>&lt;신 설&gt;</u></p>	<p>제1조(목적) ----- 「<u>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u>」 제1조 및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 제2항----- ----- ----- ----- ----- <u>관한 사항 및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안전,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하여 연구·조사·홍보·교육 등</u> ----- -----.</p> <p>제5조(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u></p>

② (생략)

<신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마약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 치료보호, 재활 등 통합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가족, 시민 대상 마약류 문제 정보제공, 단약지지 및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상담
2.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기반 연계 프로그램 등
3. 마약류 사용의 예방과 치료 중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4. 마약류 중독자 상담·치료·재활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약류 중독 관리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서울특별시립병원이 우선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 제8조 (생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